

【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】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 - 상해/상해보험
2. 보험종목의 명칭 :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
3. 보험의 목적
  - 1) 피보험자의 신체
  - 2) 법률상의 배상책임
  - 3) 자동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
  - 4) 동산 및 부동산(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)
4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연령에 관한 사항
  - 1)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  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함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으며, 보험기간별 보험료납입주기는 아래와 같음

보험기간	보험료납입주기
1년	일시납, 12회납
3년	일시납, 36회납
  - 3) 가입연령 : 보험나이 18세 ~ 75세  
단,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
5. 의무부가특약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6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7.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 :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함
8.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9.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10.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

: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‘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+ 1%’ 적용

11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2.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3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4.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5. 공시이율에 관한사항 : 해당없음

16. 기타

1) 판매채널 : 범용(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제외)

2) 재물손해관련특별약관의 경우 주택으로만 쓰이는 아래의 물건 내 수용가재만을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

- ‘아파트’로서 각 호(실)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.

여기서 ‘아파트’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함.

3) 장애인보험전용전환특별약관

① 적용근거 :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

② 적용범위 :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.

-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
-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
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

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.

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.

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,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.

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,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

신청 시 전환 가능